

5. 22.(월) 10: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고,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 바랍니다.



**부산지방검찰청**  
인권보호관/전문공보관 이영규  
전화 051-606-4164

**보도자료**  
2023. 5. 22.(월)

**제 목** **보험금을 노린 필리핀 보라카이 살인사건 수사결과**

**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**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(부장검사 박성민)는 오늘(5. 22.), 필리핀 보라카에서 **7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후 살해하고 생명 보험금을 청구한 강도살인범과, 이에 이용된 보험청약서류의 위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를 구속 기소하였음**
- 검찰은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살인사건을 약 9개월 동안 면밀히 보완수사하여 **피고인들의 강도살인 및 추가 범행을 명확히 규명하고 전원 구속한 것임**
  - ① 2회에 걸친 주거지 등 압수수색, ② 휴대폰, 태블릿 등 디지털포렌식 및 문자, 사진, 인터넷 검색내역 등 전수 분석, ③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여부 규명을 위한 전문가 감정, ④ 피고인 및 피해자의 신용카드·교통카드 등 금융거래내역 분석, ⑤ 현지 여행사 직원 진술 확보 등을 통해, **단순 살인죄로 송치된 사건이 보험금을 노린 '강도살인' 범행임을 밝혀내고,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문서위조 등 추가 범행까지 규명**
  - 강도살인범은 다른 범죄로 수형중이었다가 '23. 5. 5. 출소 예정이었으나 본건으로 다시 구속하였고, 문서위조 범죄 등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역시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 구속
- 또한, 검찰은 피해자 유족의 의견을 충실히 청취하고, 구조금 지급, 장례비,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음
- 부산지방검찰청은 앞으로도 국경을 불문하고 국민에 대한 강력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음

# I

## 사건관계인 및 공소사실 요지

### ① 피고인 및 피해자

#### ● 피고인

- A○○(남, 41세, 타투샵 운영, 본건 관련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'23. 5. 4. 만기 후 재구속)

※ 관련 사기미수죄의 범죄사실 : A○○가 자신을 채권자로, C○○를 채무자로 하는 허위의 공정증서(채권액 6,000만 원)를 작성한 다음, C○○가 사망하자 그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취하

- B○○(남, 42세, 보험설계사)

#### ● 피해자

- C○○(남, 사망 당시 39세, 무직, A○○와 고등학교 동문)

### ② 공소사실 요지

#### ● A○○의 단독 범행

- '19. 2.~5.경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연 5~8%의 이자를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○○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,000만 원을 교부받아 [사기]

- '20. 1. 17. 위 차용금 채무의 면탈 및 7억 원 상당의 C○○에 관한 생명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, C○○와 함께 필리핀 보라카이에 여행을 간 후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식을 잃게 하고 질식사시켜 살해함으로써 [강도살인]

- '23. 1. 11. 부산지방법원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마치 C○○가 자연사한 것처럼 사망보험금 6억 9,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[사기미수]

#### ● A○○, B○○의 공모 범행

- '19. 6. 3. 및 '19. 6. 4. 각각 A○○를 사망수익자로 하는 C○○ 명의의 보험 청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[사문서위조, 위조사문서행사]

- '20. 4. 28. 보험회사에 C○○의 사망보험금 7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청구를 취소하여 [사기미수]

## II

### 수사 경과

- '20. 1. 17. 피해자 C○○가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사망 후 발견
- '20. 4. 21. 피해자 유족, 경찰에 진정서 제출
- '20. 11. 26. A○○ 본건 관련 사기미수죄 등으로 구속 기소  
※ 본건은 별도로 분리하여 계속 수사
- '21. 12. 16. 부산시경, A○○, B○○ 불구속 송치
- '22. 2. 4. 보완수사요구(사망 원인·경과 등 추가 수사 필요)
- '22. 8. 3. 부산시경, 사건 재송치
- '22. 11. 18.~ '23. 4. 14. A○○, B○○의 주거지, 부산구치소 등 압수수색
- '23. 4. 28. 및 5. 3. A○○, B○○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
- ~'23. 5. 17. 압수물 분석, 관련자 조사 및 법의학 감정 등
- '23. 5. 22. A○○, B○○ 구속 기소

## III

### 수사 결과

#### ① 심층수사 착수 경위

- 피고인들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고, 피해자는 외국 현지에서 부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화장된 상황이었음
- 이례적인 보험계약 체결 내용, C○○의 사망 전후 피고인들이 보인 행적, 사건 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발견된 정황 등을 감안하여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자 심층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음

#### ② 보완수사 내용

검찰은, 사건 송치 후 보험료 납입 계좌 등 관련 계좌 거래내역 추적, 피고인들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하여 확보한 대화내용 및 메모 분석, 피해자 착용 의복 감정, 보험청약서 필적 감정, 현장 호텔 CCTV 영상 분석, 법의학자 감정의견 등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한 심층적 보완수사 진행

- A○○는,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분을 유지하여 온 C○○로부터 6,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변제요구를 받던 중, '19. 6. 3.경 B○○와 함께 '피해자 사망 시, A○○를 수익자로 하는 7억 원 상당의 보험계약' 청약서를 위조함

※ A○○가 평소 친분이 있던 보험설계사 B○○를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판단

- 그 후 A○○는, 자금난이 심화되자 C○○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고 사망 보험금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,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돈을 빌려 C○○와 함께 필리핀 보라카이로 여행을 간 다음, '20. 1. 17. 숙소 객실 내에서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에게 섭취하게 한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질식사시켜 살해함

※ 범행에 이용된 향정신성의약품은 A○○가 자신의 배우자를 통해 취득한 약품과 동일한 것으로서, C○○는 관련 처방 내역 없음. 또한 C○○가 사망 당시 착용한 의복에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검출

- 피해자의 카드 거래내역 및 보험료 납부 계좌 거래내역 등 분석 과정에서, 피고인들이 위조한 C○○ 명의의 보험청약서를 추가로 확인하였고, 본건 수사중임에도 '23. 1. 11.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망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소송사기미수 혐의도 밝혀내었음

### 3]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

- 수사과정에서 C○○의 유족과 수차 면담하여 피해내용과 수사진행에 대한 유족 의견을 수렴하였고, 유족에 대한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, 경제적 지원(장례비, 심리치료) 등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음

## IV 향후 계획

- 앞으로 피고인들에게 '죄에 상응하는 형'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, 국경을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이 침해된 강력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임 ☑